

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안연월일	2021. 12. 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1. 12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등 지방의회 관련 법규가 일괄 개정(2022. 1. 13. 字 시행)되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전문인력이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2조 제2항의 제14호 신설
 - 14.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

3. 개정규칙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

구미시의회 규칙 제 호

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사무국장) ① (생 략)	제2조(사무국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분장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4.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</u>
<u>14.</u> (생 략)	<u>15.</u> (현행 제14호와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